

의안번호	제 45 호
의결연월일	2003. . .

의결사항

사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자	사천시장
제출연월일	2003. 12. 4

사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5
----------	----

제출일자 : 2003. 12. 4

제 출 자 : 사 천 시 장

1. 제안이유

- 가. 행정조직운영의 자율성 제고 등 지방자치권한 강화를 위해 표준정원제가 대폭 개선 시행되고, 도로, 교통, 관광 등 지역여건 변화로 행정수요증대, 교량 가설로 인한 불필요기구 대두 등 행정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 지원 체제로 정비하며,
- 나. 정책의 입안이나 계획 수립을 위한 보좌 기능이 아닌 「해양수산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을 기능에 맞게 과로개편, 국으로 조정하고, 국가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리정보체계(GIS)효율적 추진과 전자정부에 대응하기 위해 전산·통신·지리정보 등 정보분야를 일원화하여 「정보담당관」을 신설함.
- 다. 특히, 관광개발 및 문화재 관리 효율화를 위해 「문화·관광」을 일원화하였으며, 기능한계에 있는 사업부서의 기능일부를 분산하는 한편, 담당관, 국의 부서계서를 업무의 연계성과 기능 등을 고려 재조정하기 위함.
- 라. 또한, 업무의 성격과 중앙-도-시군과의 연계성, 시민이해와 편의성 등을 고려, 부서의 명칭을 일부 변경하고, 기능통합과 이관 등 업무 조정에 따라,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등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부서별 기능 및 명칭을 조정함. (안 제3조 내지 제7조)

- (1)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 공보, 감사의 총괄기능인 ⇒ 「기획담당관」으로 하고 「문화공보담당관」, 「해양수산담당관」을 ⇒ 「문화관광과」, 「해양수산과」로 명칭 변경하여 총무국, 지역개발국으로 각각 편제
- (2) 「민원정보과」, 「지적과」를 통·폐합 하여 ⇒ 「민원지적과」로 하고, 민원정보과 정보통신업무와 지적과 지리정보업무 등 정보분야 일원화로 전자정부에 대응하기

위해 ⇒ 「정보담당관」 신설함.

(3) 기능 한계에 있는 건설과의 도로업무를 분리, 교통과 합하여 ⇒ 「도로교통과」 로
「위생환경사업소」 를 기능과 업무성격에 맞게 ⇒ 「환경시설사업소」 로 명칭변경

(4) 교량가설로 인한 기능 쇠퇴 기구인 ⇒ 「녹도출장소」 폐지

나. 담당관, 국의 부서계서 조정(안 제 3조 내지 제7조)

(1) 부서조정으로 인한 담당관, 국소관의 부서체계는 부서간의 연계성과 사업부서, 지원부서의 기능 등을 고려, 부서계서 조정하였음

○ 담당관 :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해양수산담당관

⇒ 기획담당관, 정보담당관

○ 총무국 :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민원정보과, 환경보호과, 주민자치과

⇒ 총무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자치과

○ 지역개발국 :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교통관광과, 지적과, 상하수도과, 녹지공원과 ⇒ 지역경제과, 해양수산과, 도시건축과, 건설과, 도로교통과, 상하수도과, 녹지공원과

다. 기구 통·폐합과 부서간의 업무이관 및 흡수, 담당관, 국 소관의 부서 조정 등으로 인한 소관사무 재조정(안 제3조 내지 제8조)

○ 담당관 : 기획담당관 ⇒ 공보업무, 정보담당관 ⇒ 전산, 통신, 지리정보업무

○ 총무국 : 문화관광과 ⇒ 문화관광업무, 민원지적과 ⇒ 민원, 호적, 지적업무

○ 지역개발국 : 해양수산과 ⇒ 해양수산업무

라. 사업소 및 출장소 분장사무를 규정으로 이관하여 시장이 따로 정함(안 제16조 및 제21조)

3. 법적근거

가.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시행령

나.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다. 표준정원시행등기구정원규정기행규칙중개정규칙 시행지침

(행정자치부 자제 12200-247, 2003. 5. 9)

라. 지방자치 단체의 기구설치 및 명칭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경남도 행정 12200- 10987, 2001. 6. 24)

4. 주요 토의과제 :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담당관실

라. 기 타

(1) 신·구 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2) 입법예고 : 해당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기획감사담당관·문화공보담당관·해양수산담당관”을 “기획담당관·정보담당관”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담당관”으로, 본문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담당관”으로 하고,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를 “제3호 내지 제6호”로 하여,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시정홍보 등 공보행정에 관한 사항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정보담당관) 정보담당관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종합정보화사업 기획조정
2. 시 산하기관 통신장비 유지관리업무
3. 국가정보지리체계(NGIS)업무에 관한 사항

제6조를 삭제하고, 제7조 내지 제14조를 제6조 내지 제13조로, 제16조 내지 제24조를 제14조 내지 제22조로 하여, 제6조제1항중 “총무과·세무과·회계과·사회복지과·민원정보과·환경보호과·주민자치과”를 “총무과·사회복지과·문화관광과·환경보호과·민원지적과·세무과·회계과·주민자치과”로 하며,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총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행사, 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3. 생활보호 등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및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주민등록, 호적, 지적 등 민원사무에 관한 사항
7.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8. 국·도비, 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납과 결산(의료보호특별회계 및 상수도특별회계 제외)에 관한 사항
9. 읍면동 기능 전환 및 주민센터 설치운영, 현장 생활민원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중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교통관광과, 지적과, 상하수도과, 녹지공원과” 를 “지역경제과, 해양수산과, 도시건축과, 건설과, 도로교통과, 상하수도과, 녹지공원과” 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지역개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제 및 기업육성에 관한 사항
2. 수산자원조성 및 증·양식사업 등 해양수산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
3. 도시계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
5. 지역개발 및 재난대비에 관한 사항
6. 도로 및 교통에 관한 사항
7. 상수도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하수도공사 및 하수도 시설물의 보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9. 도시녹화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제16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1호 내지 제4호를 삭제한다.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1호 내지 제5호를 삭제한다.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례 제493호 사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항중 “제7조” 를 “제6조” 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사천시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

②사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

③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

④사천시문화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문화공보담당관”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⑤사천시문화센터관리및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문화공보담당관”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⑥사천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문화공보담당관”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⑦사천시승공관관리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문화공보담당관”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

⑧사천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문화공보담당관”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⑨사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문화공보담당관”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⑩사천시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본문중 “문화공보담당관”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

- ⑪사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문화공보담당관”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 ⑫사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중 “문화공보담당관”을 “기획담당관”으로 하고,제6조제5항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
- ⑬사천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
- ⑭사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담당과”을 “담당부서”으로 한다.
- ⑮사천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본문중 “통상담당주사”를 “투자유치업무담당주사”로 한다.
- ⑯사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중 “재난관리담당주사”를 “재해대책기금업무담당주사”로 한다.
- ⑰사천시지명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중 “문화공보담당관”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 ⑱사천관광21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교통관광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하고, 제11조제3항중 “지역개발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
- ⑲사천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지역개발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지적과장”을 “민원지적과장”으로 한다.
- ⑳사천시자연공원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담당관”으로 하고, 제8조제2항중 “녹지담당주사”를 “공원업무담당주사”로 한다.
- ㉑사천시자연공원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농정기획담당주사”를 “농정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4조 관련)

사업소명	위치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사천시 벌리동 331번지
종합사회복지관	사천시 벌리동 256-11번지
환경시설사업소	사천시 사남면 방지리 200번지 진사지방산업단지 9-3블럭
문화예술회관	사천시 동림동 190번지

[별표3]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7조 관련)

명칭	위치	관할구역
신수출장소	사천시 신수동 227-5번지	신수동 일원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조(담당관·국의 설치) 시의 행정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u>기획감사담당관·문화공보담당관·해양수산담당관·총무국·지역개발국을 둔다</u></p>	<p>제3조(담당관·국의 설치)----- -----<u>기획담당관·정보담당관</u>·----- ----- --.</p>
<p>제4조(<u>기획감사담당관</u>) <u>기획감사담당관</u>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신설>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생략) 	<p>제4조(<u>기획담당관</u>) <u>기획담당관</u>은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시정의 홍보 등 공보행정에 관한 사항 3. (현행 제2호와 같음) 4. (현행 제3호와 같음) 5. (현행 제4호와 같음) 6. (현행 제5호와 같음)
<p>제5조(<u>문화공보담당관</u>) <u>문화공보담당관</u>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생략) 3. (생략) <p><신설></p>	<p>제5조 <삭제></p> <p>제5조(<u>정보담당관</u>) <u>정보담당관</u>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합정보화사업 기획조정 2. 시 산하기관 통신장비 유지관리업무 3. 국가정보지리체계(NGIS)업무에 관한 사항
<p>제6조(<u>해양수산담당관</u>) <u>해양수산담당관</u>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생략) 3. (생략) 	<p>제6조 <삭제></p>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7조(총무국) ①총무국에 <u>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민원정보과, 환경보호과, 주민자치과</u>를 둔다.</p> <p>②(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시정행사, 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u> 2. <u>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u> 3. <u>국·도비, 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납과 결산(의료보호특별회계 및 상수도특별회계 제외)에 관한 사항</u> 4. <u>생활보호 등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u> 5. <u>주민등록, 호적 등 민원사무에 관한 사항</u> 6. <u>환경보전에 관한 사항</u> 7. <u>읍면동 기능 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u> 	<p>제6조(총무국) ①----- <u>총무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자치과</u>-----</p> <p>-----.</p> <p>②(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시정행사, 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u> 2. <u>체육진흥에 관한 사항</u> 3. <u>생활보호 등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u> 4. <u>문화예술 및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u> 5. <u>환경보전에 관한 사항</u> 6. <u>주민등록, 호적, 지적 등 민원사무에 관한 사항</u> 7. <u>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u> 8. <u>국·도비, 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납과 결산(의료보호특별회계 및 상수도특별회계 제외)에 관한 사항</u> 9. <u>읍면동 기능 전환 및 주민센터 설치 운영, 현장 생활민원에 관한 사항</u>
<p>제8조(지역개발국) ①지역개발국에 <u>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교통관광과, 지적과, 상하수도과, 녹지공원과</u>를 둔다.</p> <p>②(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지역경제 및 기업육성에 관한 사항</u> 2. <u>지역개발 및 재난대비에 관한 사항</u> 3. <u>도시계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u> 4. <u>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u> 5. <u>교통 및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u> 6. <u>지적공부정리 및 개별필지의 지가 산정에 관한 사항</u> 7. <u>상수도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u> 8. <u>하수도 공사 및 하수도 시설물의 보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u> 9. <u>도시녹화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u> 	<p>제7조(지역개발국) ①-----<u>지역경제과, 해양수산물과, 도시건축과, 건설과, 도로교통과, 상하수도과, 녹지공원과</u>-----.</p> <p>②(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지역경제 및 기업육성에 관한 사항</u> 2. <u>수산자원조성 및 증·양식사업 등 해양수산물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u> 3. <u>도시계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u> 4. <u>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u> 5. <u>지역개발 및 재난대비에 관한 사항</u> 6. <u>도로 및 교통에 관한 사항</u> 7. <u>상수도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u> 8. <u>하수도공사 및 하수도 시설물의 보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u> 9. <u>도시녹화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u>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 내지 제14조(생략)</p> <p>제16조 및 제17조</p> <p>제18조(소관사무)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u>체육시설관리사업소</u></p> <p>가. <u>체육시설의 관리기획 조정</u></p> <p>나. <u>체육시설물 관리</u></p> <p>다. <u>공설운동장 및 체육관 관리</u></p> <p>라. <u>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처리</u></p> <p>마. <u>입장료·사용료 및 기타수입 처리</u></p> <p>바. <u>기타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u></p> <p>2. <u>종합사회복지관</u></p> <p>가. <u>복지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사회조사</u></p> <p>나. <u>주민편의 이용시설 운영 및 관리</u></p> <p>다. <u>여가선용을 위한 부업 및 취미교실 운영</u></p> <p>라. <u>기타 복지관 운영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u></p> <p>마. <u>요보호대상 여성상담</u></p> <p>바. <u>여성능력개발과 교양교육</u></p> <p>사. <u>재가복지사업</u></p> <p>아. <u>자원봉사자 육성 및 운영</u></p> <p>3. <u>위생환경사업소</u></p> <p>가. <u>위생환경사업의 종합기획 조정</u></p> <p>나. <u>예산, 회계 및 재산공인 관리</u></p> <p>다. <u>사업소 사용료부과·징수</u></p> <p>라. <u>사업소 시설 운전 조작</u></p> <p>마. <u>사업소 기계시설 및 전기시설 유지관리</u></p> <p>바. <u>실험실 유지관리 및 공해방지에 관한 사항</u></p> <p>사. <u>분뇨의 위생처리방법 연구에 관한 사항</u></p> <p>아. <u>사업소 시설 유지 보수</u></p> <p>자. <u>사업소 시설공사의 설계, 측량 및 시공감독</u></p> <p>차. <u>각종기자재의 관리 및 검사</u></p> <p>카. <u>분뇨의 반입통제 및 규제에 관한 사항</u></p> <p>타. <u>하수처리장 건설에 관한 사항</u></p> <p>파. <u>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간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u></p>	<p>제8조 내지 제13조(현행 제9조 내지 제14조와 같음)</p> <p>제14조 및 제15조(현행 제16조 및 제17조와 같음)</p> <p>제16조(소관사무)-----</p> <p>사무는 <u>시장이</u> 따로 정한다.</p> <p>1. <u>〈삭 제〉</u></p> <p>가. <u>〈삭 제〉</u></p> <p>나. <u>〈삭 제〉</u></p> <p>다. <u>〈삭 제〉</u></p> <p>라. <u>〈삭 제〉</u></p> <p>마. <u>〈삭 제〉</u></p> <p>바. <u>〈삭 제〉</u></p> <p>2. <u>〈삭 제〉</u></p> <p>가. <u>〈삭 제〉</u></p> <p>나. <u>〈삭 제〉</u></p> <p>다. <u>〈삭 제〉</u></p> <p>라. <u>〈삭 제〉</u></p> <p>마. <u>〈삭 제〉</u></p> <p>바. <u>〈삭 제〉</u></p> <p>사. <u>〈삭 제〉</u></p> <p>아. <u>〈삭 제〉</u></p> <p>3. <u>〈삭 제〉</u></p> <p>가. <u>〈삭 제〉</u></p> <p>나. <u>〈삭 제〉</u></p> <p>다. <u>〈삭 제〉</u></p> <p>라. <u>〈삭 제〉</u></p> <p>마. <u>〈삭 제〉</u></p> <p>바. <u>〈삭 제〉</u></p> <p>사. <u>〈삭 제〉</u></p> <p>아. <u>〈삭 제〉</u></p> <p>자. <u>〈삭 제〉</u></p> <p>차. <u>〈삭 제〉</u></p> <p>카. <u>〈삭 제〉</u></p> <p>타. <u>〈삭 제〉</u></p> <p>파. <u>〈삭 제〉</u></p>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4. <u>문화예술회관</u></p> <p>가. <u>문화예술회관 관리</u></p> <p>나. <u>공연팀 섭외</u></p> <p>다. <u>시설사용료 부과·징수·시설 임대</u></p> <p>라. <u>전시관 및 매표소 관리</u></p> <p>마. <u>시설물 관리 전반</u></p> <p>제19조 및 제20조 (생략)</p> <p>제21조(업무) <u>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u></p> <p style="margin-left: 20px;">1. <u>주민등록에 관한 사무</u></p> <p style="margin-left: 20px;">2. <u>인감에 관한 사무</u></p> <p style="margin-left: 20px;">3. <u>물품의 수납검사 및 보관</u></p> <p style="margin-left: 20px;">4. <u>수입증지의 출납 및 보관</u></p> <p style="margin-left: 20px;">5. <u>기타 시장지시 사항의 처리 및 관할 동장의 협조사항</u></p> <p>제22조 내지 제24조 (생략)</p> <p style="margin-left: 20px;">부 칙(제493호)</p> <p>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 (한시기구) <u>제7조중 주민자치과의 존속 기한은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u></p>	<p>4. <u><삭 제></u></p> <p>가. <u><삭 제></u></p> <p>나. <u><삭 제></u></p> <p>다. <u><삭 제></u></p> <p>라. <u><삭 제></u></p> <p>마. <u><삭 제></u></p> <p>제17조 및 제8조(현행 제19조 및 제20조와 같음)</p> <p>제19조(업무) <u>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u></p> <p style="margin-left: 20px;">1. <u><삭 제></u></p> <p style="margin-left: 20px;">2. <u><삭 제></u></p> <p style="margin-left: 20px;">3. <u><삭 제></u></p> <p style="margin-left: 20px;">4. <u><삭 제></u></p> <p style="margin-left: 20px;">5. <u><삭 제></u></p> <p>제20조 내지 제22조(현행 제22조 내지 제24조와 같음)</p> <p style="margin-left: 20px;">부 칙(제493호)</p> <p>①(시행일) (현행과 같음)</p> <p>②(한시기구) <u>제6조중 -----</u> -----.</p>

신·구 대비표

[개 정 전]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6조관련)

사 업 소 명	위 치
체육시설관리사업소	<u>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3번지</u>
종합사회복지관	사천시 벌리동 256-11번지
<u>위생환경사업소</u>	사천시 사남면 방지리 200번지 진사지방산업단지 9-3블럭
문화예술회관	사천시 동림동 190번지

[개 정 후]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4조관련)

사 업 소 명	위 치
체육시설관리사업소	<u>사천시 벌리동 331번지</u>
종합사회복지관	사천시 벌리동 256-11번지
<u>환경시설사업소</u>	사천시 사남면 방지리 200번지 진사지방산업단지 9-3블럭
문화예술회관	사천시 동림동 190번지

신·구 대비표

[개정전]

[별표3]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9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u>늑도출장소</u> 신수출장소	<u>사천시 늑도동 40번지</u> 사천시 신수동 227-5번지	<u>늑도동 일원</u> 신수동 일원

[개정후]

[별표3]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7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u><삭 제></u> 신수출장소	<u><삭 제></u> 사천시 신수동 227-5번지	<u><삭 제></u> 신수동 일원

관 계 법 령 발 취

지 방 자 치 법

第3條 (地方自治團體의 法人格 및 管轄) ①地方自治團體는 法人으로 한다.

②特別市와 廣域市 및 道(이하 "市·道"라 한다)는 政府의 直轄下에 두고, 市는 道の 管轄區域안에, 郡은 廣域市 또는 道の 管轄區域안에 두며, 自治區는 特別市와 廣域市の 管轄區域안에 둔다.

③特別市 또는 廣域市가 아닌 人口 50萬 이상의 市에는 自治區가 아닌 區를 둘 수 있고, 郡에는 邑·面을 두며, 市와 區(自治區를 포함한다)에는 洞을, 邑·面에는 里를 둔다.

④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市에는 都市의 形態를 갖춘 地域에는 洞을, 그 밖의 地域에는 邑·面을 두되, 自治區가 아닌 區를 둘 경우에는 當해區에 邑·面·洞을 둘 수 있다.

第4條 (地方自治團體의 名稱과 區域) ①地方自治團體의 名稱과 區域은 宗전에 의하고 이를 變更하거나 地方自治團體를 廢置·分合할 때에는 法律로써 정하되, 市·郡 및 自治區의 管轄區域 境界變更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를 廢置·分合하거나 그 名稱 또는 區域을 變更할 때에는 關係地方自治團體의 議會(이하 "地方議會"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第13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住民投票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自治區가 아닌 區와 邑·面·洞의 名稱과 區域은 宗전에 의하고, 이를 變更하거나 廢置·分合할 때에는 行政自治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當해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다만, 區域變更은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當해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개정 1999.8.31>

④ 里의 區域은 自然의 村落을 기준으로 하되, 그 名稱과 區域은 宗전에 의하고 이를 變更하거나 廢置·分合할 때에는 當해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⑤洞·리에 있어서는 行政能率과 住民便宜를 위하여 當해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洞·리를 2개이상의 洞·리로 운영하거나 2개이상의 洞·리를 하나의 洞·리로 운영하는등 行政運營上 洞·里(이하 "行政洞·里"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⑥第5項의 行政洞·리에 當해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下部組織을 둘 수 있다.

第102條 (行政機構) ①地方自治團體의 行政事務를 分掌하기 위하여 필요한 行政機構를 두되, 市·道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하고, 市·郡 및 自治區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市·道知事의 승인을 얻어 당해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②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行政機構의 設置·운영에 있어서 그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地方自治團體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第103條 (地方自治團體의 公務員) ①地方自治團體에는 당해地方自治團體의 經費로써 부담하는 地方公務員을 두되, 그 定員은 大統領令이 정한 基準에 따라 당해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②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地方公務員의 定員管理에 있어서 그 規模의 適正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地方公務員의 任用과 試驗·資格·報酬·服務·身分保障·懲戒·教育訓練등에 관하여는 따로 法律로 정한다.

④地方自治團體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公務員을 둘 수 있다.

⑤第4項에 規定된 國家公務員은 國家公務員法 第32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5級이상의 國家公務員은 당해地方自治團體의 長의 提請으로 所屬長官을 거쳐 大統領이 任命하고, 6級이하의 國家公務員은 당해地方自治團體의 長의 提請으로 所屬長官이 任命한다.

第104條 (直屬機關) ①地方自治團體는 그 소관事務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大統領令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消防機關·教育訓練機關·保健診療機關·試驗研究機關 및 中小企業指導機關등을 直屬機關으로 設置할 수 있다.

第105條 (事業所) 地方自治團體는 특정 業務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事業所를 設置할 수 있다. 다만, 地方自治團體의 自治事務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第103條

第1項의 定員範圍안에서 당해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써 事業所를 設置할 수 있다.

第106條 (出張所) 地方自治團體는 遠隔地 住民의 편의와 特定地域의 開發促進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出張所를 設置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0조의2 (출장소의 설치) ①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로 한다.

1. 원격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소관사무를 분장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종합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3. 관할구역의 범위가 분명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장소를 설치할 수 없다.

1.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제외한다)의 경우
2.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행정동의 경우

③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출장소의 설치승인에 관하여는 제4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소"는 "출장소"로 본다.

지역보건법

第7條 (保健所의 設置) 保健所(保健醫療院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設置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第10條 (保健支所의 設置) 地方自治團體는 保健所의 業務遂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保健所의 支所(이하 "保健支所"라 한다)를 設置할 수 있다.

지역보건법시행령

제7조 (보건소의 설치)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군·구별로 1개소씩 설치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8·2·28>

제8조 (보건지소의 설치)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은 읍·면(보건소가 설치된 읍·면을 제외한다)마다 1개소씩으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5조 (기구설치의 일반요건) ①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관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과이상의 하부조직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설치한다.

②실·본부[본부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한한다]는, 업무의 성질상 국 또는 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한다.

③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조사·분석·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국장을 제외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밑에 설치하며, 담당관 밑에는 과를 둘 수 없다.

④과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2인[시·도는5급 4인 이상,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는 6급 4인 이상 포함]이상의 정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1. 국의 소관업무(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군의 경우에는 그 소관사무를 말한다)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수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⑤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 설치하는 실·국 및 실·과·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지사를 말한다)의 지휘·감독하에 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접 보좌하는 공보기능 등 그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지방자치단체는 정책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보조·보좌기관인 실·국 및 실·과·담당관을 폐지하고 그 폐지된 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사업소를 신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시·군·구 본청의 실·국 및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 및 실·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미달하여 실·국 또는 실·과·담당관을 운영하고 있는 시·군·구는 그 설치기준의 범위안에서 실·국 또는 실·과·담당관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 ③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고 있는 시의 시장은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당해 시 본청의 실·과·담당관의 정수의 일부를 관할 자치구가 아닌 구의 정수로 조정하여 이를 운영할 수 있다.
- ④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 및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⑤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 ⑥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 및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함의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방농촌진흥기구) ①농사에 관한 지역적인

시험연구사업·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에 관한 사업을 분장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농업기술원을 두며, 지역별 특화작목에 관한 시험·연구를 행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원장소속하에 특화작목시험장을 둘 수 있다.

- ②지방자치단체의 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사업등을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시장·군수 소속하에 농업기술센터를 둘 수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소를 둘 수 있다.
- ③농업기술원에는 원장(농업기술센터에는 소장)을 두며, 원장은 도지사(소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및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④이 영에서 정한 사항외에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 및 특화작목시험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⑤농업기술원에 국 또는 부와 그 하부조직으로 과를, 농업기술센터에 과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국·과 및 그 하부조직과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업기술센터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광역시장·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 ⑦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요청을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과 효율적인 농촌진흥사업의 추진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진흥사업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⑧농업기술원 및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원장, 소장, 국장·부장 및 과장·담당관 등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표준정원시행등기구정원규정시행규칙중개정규칙 시행지침

(행정자치부 자제 12200-247, 2003. 5. 9)

<개 정 배 경>

- 1998년부터 지방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일시 정지한 표준정원제를 대폭개선 재시행
 -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행정조직운영의 자율성제고
- 지방공무원 직종·직급구조가 변화되어 지방공무원 정원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 조정

가. 개정요지

1)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제 시행

- 97년 시행된 종전의 산식을 폐지하고 새로운 표준정원 산식 규정
 - 자치단체 계층별 산식의 구분, 표준화 지수, 산정에 반영된 변수의 통계 기준 등

2) 표준정원에 일정비율 보정한 보정정원 인정

- 자치단체는 표준정원 범위내에서 인력운용 원칙
- 단 특정한 행정수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보정정원까지 자율적 정원 책정 가능
- 현정원이 보정정원보다 초과한 자치단체의 초과정원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

※ 우리시 표준정원 협의 결과

[기구]

구분	협 의 결 과	비 고
2003년	· 3담당 범위내 책정	
2004년 이 후	· 매년 1월 재협의	

[정원 협의사항]

구분	합계	일 반 직						기 능 직				별정직	
		소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6급	9급	10급	7급	8급
2003년	-	-		3	4	11	△18	-	1	1	△2	2	△2
2004년	△13	매년 1월 재협의											
2005년	△13	"											

지방자치 단체의 기구설치 및 명칭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경남도 행정 12200- 10987, 2001. 6. 24)

- 기구설치시 고려원칙(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독자성·계속성
 - 기구가 수행해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 통솔범위 등 기능의 능률성
 - 위탁가능사무와 공사·공단·조합 설립가능사무에 대한 기구설치 금지
 - 자문기관에의 사무 기구 설치 금지 등

- 보조·보좌기관 기구명칭 부여시 고려원칙
 - 공공성과 주민이해 편의성 동시확보
 - 기능과 명칭간의 연계성 확보
 - 기관간의 통일성·균형성의 확보